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김용태·서천호·조은희
김성원·엄태영·이성권
임종득·정동만·박충권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,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.

또한,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·인력·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,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·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49조 및 제55조)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범위 등에 관하여”를 “범위와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업종, 선정절차, 그 밖에 시행에”로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을 할 때 같은 항에 따른 업종 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55조제6호 중 “공동개발”을 “공동개발, 온실가스 공동감축 및 녹색경영을 위한 공급망 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·판로개척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
9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·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활용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9조(사업전환 지원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9조(사업전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을 할 때 같은 항에 따른 업종 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,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, 선정절차, 지원의 종류 및 <u>범위 등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범위와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업종, 선정절차, 그 밖에 시행에----- -----.
제55조(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)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·윤리적 책	제55조(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임을 다하는 경영(이하 “녹색 경영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도록 지원·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<u>공동개발</u>에 대한 지원 7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8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<u>공동개발, 온실가스 공동 감축 및 녹색경영을 위한 공급망 협력</u>-----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·판로개척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</u> 9. <u>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 경영 정보의 표준화·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활용</u> 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
---	--